

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제명

- 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3-10호, '23.2.1.)

2. 개정사유

- 탁송품 과세운임료의 운임 및 적용요건 개정
- 제4방법에서 동종·동류비율 산출 절차 등 개선

3. 주요 개정내용

탁송품 과세운임료 및 적용요건 개정(§24)

- 별표 제1호 제목에서 “특급탁송물품”을 규칙과 동일한 용어인 “탁송품”으로 통일
-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료를 국제특급우편요금 등을 참고하여 개정
-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료를 적용할 때 30kg 초과중량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

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정(§31)

-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

□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·동류 품목번호의 결정(§33)

- 산출대상 품목군 결정의 기준 및 동종·동류 품목번호의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

□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절차 개선(§34)

- 최초단계에서 동종·동류 품목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에 적용
- 선정단계별 업체수 제한(100개, 30개) 삭제
- 업종 부호의 제공 출처를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업종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업종 부호의 기준 시점 규정
-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이 유사한 규모의 업체 선정 기준 신설
- 제4방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요건 완화 규정 삭제

□ 동종·동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법을 별도 규정(§35)

-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,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
- 납세의무자 비율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추가, 동종·동류비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비율을 통보하도록 규정

□ 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(§36)

- 산출대상 품목군별 매출액, 매출원가를 기초로 한 납세의무자 비율의 계산식 규정
-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

□ 동종·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(§37)

- 산출대상 품목군, 동종·동류 품목번호,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·동류비율과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을 이의제기 대상으로 규정

□ 제6방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 (§39)

- 제6방법에서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선정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

4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5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6. 시행일자 : 2023. 8. 10.